NAVER 뉴스 인쇄하기 취소

한미FTA '전략적 역제안' 실익 5가지

| 기사입력 [illegibl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조기 타결된 것은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철저히 따진 ‘전략적 고민’의 산물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요구’라는 부분을 탈색하고 보면 사실 우리의 제도와 정책에서 손해볼 것 없는 노동·환경 분야의 새로운 제안은 수용하면서 비자 문제(전문직 비자 쿼터 및 일반인 대상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미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받았고, 의약품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를 18개월간 유예하는 실익을 챙겼다.

1.추가협의 시한-사소한 명분보다 전략적 실익이 더 크다

추가협의가 미국 의회를 의식한 미 행정부의 요구로 시작된 만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미국에 밀렸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끌수록 ‘명분’이 설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통상협상장에서 실익이 없는 명분 추구는 금물이다. 협상을 미 행정부의 신속무역권한(TPA)이 소멸되는 6월 말 이후로 넘길 경우 협정문에 대한 미 의회의 입김과 영향이 더 높아질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높다.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이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미 의회 입장에서 자동차와 개성공단, 쌀 부분까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터여서 추가협의를 TPA 만료 이후까지 지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미국이 제안해 온 신통상정책이 우리나라의 현행 규범에 비춰 원칙적으로 무리가 없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지향해나가야 할 내용이라면 TPA 시한 만료 이후까지 협상을 계속해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가 생기는 불확실성까지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이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초청
한미FTA 2차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주최: 한국언론재단

한미FTA 추가협의가 조기타결된 것은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철저히 따진 ‘전략적 고민’의 산물이다.

이익의 균형을 지키는 범위에서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되 오히려 반대 급부를 받아내는 것이 ‘실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된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비자 문제와 의약품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공식 서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두 차례나 유감을 나타냈다.

결국 미측은 우리의 ‘역제안’을 받아들여 추가협의가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협상의 큰 틀과 이익의 균형은 흔들지 않으면서 일부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비자 문제와 의약품 분야에서 추가적인 실익을 챙겼다.

2.추가협의 방식-통상협상의 '포커게임'에 대한 이해 있어야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가협의 초기에 ‘추가협의와 서명 분리’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을 들어 ‘조기타결’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상대가 있는’ 통상협상의 밀고 당기기식 '포커 게임'의 과정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내부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저울질 하면서 실익극대화를 추구하더라도 밖으로는 이를 드러낼 수 없다. 미측 입장에서 TPA 시한 만료 이후까지 추가협의를 할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재협상요구가 더 거세지고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명일 이전 일괄타결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을 끄는 인상을 풍길 수록 우리에게 유리했던 것이다.

지난 22일 1차 재협상이 끝난 뒤 김종훈 우리 쪽 수석대표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협상과 서명의 분리 원칙’으로 맞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고도의 ‘협상 전략’인 셈이다. 이를 통해 민감한 자동차, 개성공단 원산지와 관련된 돌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고, 미국측을 더욱 압박해 ‘역제안’을 통한 ‘반대 급부’를 더 얻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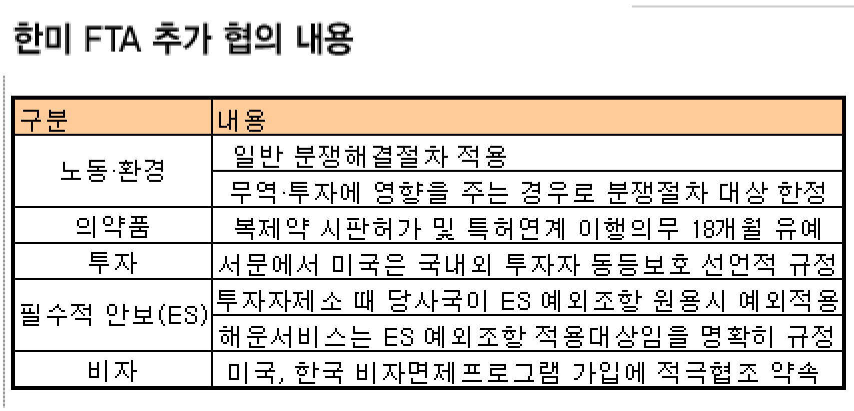

한미 FTA 추가 협의 내용

구분	내용
노동·환경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분쟁절차 대상 한정
의약품	복제약 시판허가 및 특허연계 이행의무 18개월 유예
투자	서문에서 미국은 국내외 투자자 동등보호 선언적 규정
필수적 안보(ES)	투자자제소 때 당사국이 ES 예외조항 원용시 예외적용
	해운서비스는 ES 예외조항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비자	미국, 한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적극협조 약속

3.노동·환경·투자의 제도적 실익-우리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노동 환경분야의 핵심사항들도 알고보면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령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노동과 환경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도 이미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추구해나가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권리(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들과 7개 다자 환경협약의 의무(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 등을 채택하고 유지·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해야할 내용이다.

의약품 지재권과 관련해 미국 쪽 요구대로 국제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관련 조항이 이 선언에 따라 각 당사국이 공중보건 보호 조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에이즈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투자자 국가소송(ISD)에서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만 안전'도 필수적 안보로 인한 예외 대상임을 확인했다. 정부 조달 참여 기업에 노동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들 항목은 미국이 요구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 가령 두 나라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근로시간이나 산업안전 최저임금근로조건 충족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수도 있다.

협정문 서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도 글로벌 금융허브를 추구하는 우리의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4.일반분쟁해결 단서조항-안전판 확보 성과

노동·환경 분야에서 규정을 위반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처럼 일반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특별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해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 돈을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돼 있었다. 추가협의에서는 앞으로 노동·환경 기준 위반 사안에 대해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벌과금도 상대국이 가져가도록 됐다.

이 때문에 추가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노동, 환경 분쟁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해 근거 규정을 삽입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부속 서한에 분쟁 당사자는 국가로 한정하고, 분쟁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선행)을 의무화하며, 무역·투자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무역 투자효과 입증요건 강화), 무역보복은 피해액에 상응하는 규모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5. 의약품 특허연계 이행 유예-비자면제 눈에띄는 실익

우리가 의약품 특허 연계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하도록 끌어낸 것이 눈에 띄는 실익이다. 미국 제약회사가 특정 약품을 국내에 시판하기 위해 특허 신청과 시판 허가를 동시에 낼 수 있고, 이때 우리 정부는 일정기간 해당 약품의 복제약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는 우리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이었다.

이같은 복제약 특허와 시판허가간 연계의무는 기존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됐던 사항으로, 복제약이 많은 국내 제약사로선 18개월간 유예를 통해 나름대로 준비할 여유를 얻게 된 셈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자 문제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 적극 검토성명과 후속조치를 보장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비자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노력과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자면제 문제와 함께 역제안했던 간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다.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칫 미 행정부가 튀는 발언을 할 경우 오히려 한미FTA 비준동의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 '적극 협조'라는 낮은 단계의 표현을 선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 의회를 설득하는데도 힘을 받을 것이다.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8&aid=0000034556

인쇄하기 취소